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수행기관별 역할

1 보건복지부

○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계획 수립 및 전파, 현장점검·모니터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○ 종교계·사회복지계 간담회 등 민간분야 협력 강화체계 구축

2 시도 복지총괄과

○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, 시군구 추진체계 마련 독려·실적 점검 등 지자체 집중 발굴·지원기간 운영 기반 마련

3 시군구 복지총괄팀

○ **「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」 기획·조정 총괄**

- 각 사업 담당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, **향후 결과 취합 보고** (복지부로 제출,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)

- 지역 내 **민간자원을 적극 활용**하여 대상자 발굴·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협력체계 강화, 홍보 등 추진**

4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

○ **관할 읍면동에서 발굴된 대상 중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적극 개입·지원**

* 민간 기관에 금번 조사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,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

- **통합사례관리** 대상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 실시·사례관리 대상 등록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관리·지원

5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

○ 대상 가구에 대한 **방문, 전화 등 상담 실시**

○ 지역 내「좋은 이웃들」, 민간 기관, 통리장,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**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**

*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,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

○ 발굴된 대상자는 **긴급지원제도, 기초생활보장제도** 신청 유도

- 긴급지원,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**공공·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** (특별 발굴·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)

* ex) 에너지재단 난방비 지원사업,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

○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**통합사례관리 의뢰**

6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

* 소득·재산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,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연계 등을 통해 보호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,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**통합사례관리 의뢰**

7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

○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**생계지원, 동절기 연료비,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**

○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**통합사례관리 의뢰**

<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>

◇ **'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추진계획'***과 연계하여 **위기가구 적극 발굴·지원**

*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「긴급복지지원법('15.7.1. 시행)」 개정에 따라, 동절기 기간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실시(기초생활보장과-7554('15.9.24))

◇ **동절기 연료비 지원**

○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(10월~3월)에 한하여 연료비(월 91천원) 추가지원 가능

◇ **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**

○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(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,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실비로 지원 가능

* 재공급에 필요한 수수료 포함 / 비주택용·공업용·소매상용도의 전기요금 제외

○ 단전가구 방문 등을 통해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